

※ 전자금융/기타 관련 총 6 개 약관

약관명	해당약관 조항	
	변경전	변경후
자금집금 대행서비스 이용약관	<p>제 13 조 계약의 해지</p> <p>1. 본 약관은 계약일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. 계약만기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1년 단위로 연장됩니다.</p> <p>2.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,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한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</p> <p>3. 본 계약의 해지시에도 본질상 유효한 조항은 상대방의 의무이행시까지 효력을 가지며, 각 당사자의 승계자 및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.</p>	<p>제 13 조 계약의 해지</p> <p>1. <u>본 계약은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서면으로 30일 사전 통지에 의해 해지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.</u></p> <p>2. 좌동</p> <p>3. 좌동</p>
가상계좌 자금관리서비스 이용약관	<p>제 9 조 (효력 및 계약기간) 본 계약은 계약 체결 이후 “을”이 “갑”에 대하여 가상계좌 자금관리 서비스를 개시하는 날인 []년 []월 []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며, 그 날부터 1년간 유효하다. 다만, 계약기간 만료</p>	<p>제 9 조 (효력 및 계약기간) 본 계약은 본 계약은 계약 체결 이후 “을”이 “갑”에 대하여 가상계좌 자금관리 서비스를 개시하는 날인 []년 []월 []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며, <u>갑과 을 중 어느 한쪽이 30일 사전</u></p>

신구조문 대비표

약관명	해당약관 조항	
	변경전	변경후
	1 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.	<u>통지에 의한 서면으로 해지 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유지한다. 그러나 본 계약의 해지시에도 본질상 유효한 조항은 상대방의 의무이행이 완료될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며, 각 당사자의 승계자 및 양수인에게 적용된다.</u>
펌뱅킹서비스 이용계약서	<p>제 22 조 (효력의 발생)</p> <p>① 본 계약은 양당사자가 본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.</p> <p>② 본 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 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해지통지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.</p>	<p>제 22 조 (효력의 발생)</p> <p>① 본 계약은 양당사자가 본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<u>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30 일 사전 통지에 의한 서면으로 해지 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유지한다.</u></p> <p>② <u>본 계약의 해지시에도 본질상 유효한 조항은 상대방의 의무이행이 완료될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며, 각 당사자의 승계자 및 양수인에게 적용된다.</u></p>
가상네트워크 집금을 통한 통합매출채권 관리시스템	<p>제 12 조 계약의 효력 발생 및 변경</p> <p>① 본 약관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어느 일방이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.</p>	<p>제 12 조 계약의 효력 발생 및 변경</p> <p>① 본 약관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어느 일방이 <u>최소 30 일 이전에</u>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.</p>

약관명	해당약관 조항	
	변경전	변경후
E-Channels 이용자 계약	<p>국가별 부속조건</p> <p>10. 법 및 소송절차</p> <p>본 계약 제 14 조(법 및 소송 절차)에 따라 은행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과 이용자간에 합의한 법원과 다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, 은행은 이용자에 대해 관할을 가지는 법원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</p>	<p>국가별 부속조건</p> <p>10. 법 및 소송절차</p> <p><u>본 계약 제 14 조(법 및 소송 절차)에 의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.</u></p>
어음수표 보관 및 추심 대행거래 약정서	<p>제 7 조</p> <p>미추심 보관어음이 없고 최종거래일 (보관어음의 수탁, 보관, 추심, 입금, 반환거래)로부터 1 년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은행은 별도의 통보없이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</p>	<p>제 7 조</p> <p>미추심 보관어음이 없고 최종거래일 (보관어음의 수탁, 보관, 추심, 입금, 반환거래)로부터 1 년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<u>은행은 최소 14 일 이전의 서면 통지로써</u>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</p>